안전한 예술활동을 위한 튼튼한 사회보장

예술인 산재보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안전한 예술활동을 위한 튼튼한 사회보장

예술인 산재보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비매품 | 무료
13600
9 791192 242259
ISBN 979-11-92242-25-5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2012년도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www.kawf.kr | wci.kawf.kr | 02-3668-0200

안전한 예술활동을 위한 튼튼한 사회보장

예술인 산재보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산재보험은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 관련 사고로
부담해야하는 **치료비**와
일하지 못하는 기간 **생활비**를 받고
50~90% **보험료도 지원**하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리세요.

체크 리스트

하나씩 짚어보다 보면 꼭 필요한 정보로 건너뛸 수 있어요!

1 예술활동을 하는 중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Yes
20p 이동
예술인 산재보험은

☐ No
11p 이동
왜 예술인에게 산재보험이 필요할까요?

2 예기치 않은 부상이 예술활동에 영향을 끼칠 것을 걱정한 적이 있으세요?

☐ Yes
14p 이동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산재 발생 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No
12p 이동
왜 예술인에게 산재보험이 필요할까요?

3 타 보험과 비교해서 예술인 산재보험의 장점을 알고 계신가요?

☐ Yes
42p 이동
보험 가입 신청

☐ No
22p 이동
산재보험과 민간보험 비교

4 가입을 하고 싶어도 보험료 납부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우세요?

☐ Yes
23p 이동
산재보험 사무대행과 보험료 지원

☐ No
44p 이동
보험료 선택 및 납부

5 예술인 산재보험의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 등의 용어를 알고 계신가요?

☐ Yes
42p 이동
보험 가입 신청

☐ No
21p 이동
산재보험 관련 용어 설명

6 산재로 인정받는 업무상 재해의 기준을 아시나요?

☐ Yes
64p 이동
청구 절차와 방법

☐ No
67p 이동
청구 조건

7 산재 증빙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받기도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 Yes
17p 이동
산재 청구로 실제 혜택을 받은
예술인들이 있나요?

☐ No
주위 예술인들에게 산재보험을 알려 주세요!

8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회보장 지원사업을 알거나 참여한 적이 있으신지요?

☐ Yes
주위 예술인들에게 산재보험을 알려 주세요!

☐ No
86p 이동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소개

목차

왜 예술인에게 산재보험이 필요할까요? 10

산재 발생 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3

실제 산재 청구로 혜택을 받은 예술인들이 있나요? 16

① 예술인 산재보험 소개

❶ 예술인 산재보험은 20
❷ 산재보험 관련 용어 설명 21
❸ 산재보험과 민간보험 비교 22
❹ 산재보험 사무대행과 보험료 지원 23

② 산재보험 혜택

❶ 요양급여 26
❷ 휴업급여 27
❸ 상병보상연금 28
❹ 장해급여 29
❺ 간병급여 30
❻ 직업재활급여 31
❼ 유족급여 32
❽ 장례비 33

FAQ 자주 묻는 질문 34

산재보험의 혜택범위

Q1 산재보험의 혜택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Q2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Q3 진료비는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나요?
Q4 우울증이나 정신질환도 보장해 주나요?
Q5 해외에서의 예술활동 중 다쳤을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6 연극 출연 계약 후 사설학원에서 교습을 받던 중 다쳐도 적용이 되나요?
Q7 출연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연습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 청구가 가능한가요?
Q8 예술활동 중에 폭행을 당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Q9 예술활동을 위해 촬영장으로 가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휴업급여, 유족급여

Q10 휴업급여를 받으며 요양하는 중에 취업하면 휴업급여가 중단되나요?
Q11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Q12 유족보상연금의 대상은 어떻게 되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③ 가입·납부·변경·해지

❶ 보험 가입 신청 42
❷ 보험료 선택 및 납부 44
❸ 변경 및 해지 48

서식 1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49
서식 2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서 52
서식 3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53
서식 4 기준보수(등급) 신고서 54
서식 5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55

FAQ 자주 묻는 질문 56

보험 가입
Q13 예술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Q14 직장 4대 보험 가입자가 예술인 산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Q15 직장 산재보험 가입 예정자인데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나요?
Q16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Q17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예술 단체의 대표도 가입할 수 있나요?
Q18 원로 화가인데 대리인을 통해서 가입 신청할 수 있나요?
Q19 개별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재단에서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Q20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민간의료보험은 해지해도 되나요?

보험료 납부
Q21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Q22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3 장기 해외 체류 시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4 예술활동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Q25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을 할 때만 보험료를 낼 수는 없나요?
Q26 보험이 만기되면 기존 납입금이 환급 되나요?
Q27 월 납부 보험료를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

보험료 미납과 해지
Q28 미납된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Q29 예술활동 계약 종료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30 잔고 부족으로 미납 사실을 모르다가 부상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31 산재보험 해지 이후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④ 보험급여 청구

❶ 청구 절차와 방법 64
❷ 청구 조건 67
❸ 불승인의 경우 68
❹ 산재지정 의료기관 69

서식 6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70
서식 7 요양비청구서 74
서식 8 휴업급여청구서 76

FAQ 자주 묻는 질문 77

산재보상 청구
Q32 예술활동 중 산재가 발생하면 해당 예술활동 계약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Q33 상황이 위급해서 먼저 자비로 치료를 완료한 경우에도 산재보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Q34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치료 받은 경우도 산재보험 청구를 해야 하나요?
Q35 추가 부상이 발견되면 산재보험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Q36 요양 치료 후 재발하면 산재보험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Q37 보험료 미납상태에서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나요?
Q38 국내 회사와 계약하고 해외 활동 중 재해 발생 시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Q39 치료 중 병원을 옮기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Q40 산재보상 청구 과정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타 보험과의 관계
Q41 산재보험이 다른 민간 보험보다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Q42 민간 상해보험과 중복 지원이 되나요?
Q43 산재보험 가입 시 '보수등급'으로 소득 신고가 되는건가요?

예술활동증명 안내 8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소개 8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4년 사업 개요 88

예술인에게

산재보험이

필요할까요?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사회보험으로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예술인은 직업적 특수성으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2012년부터 중소기업사업주 방식으로 임의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 가입 예술인 산재보험
운영주체	국가		국가
가입 조건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임의가입(필요 시 가입 신청)
보험료	보수총액과 업종별 보험료율 기준으로 징수		실제 소득과 관계 없이 원하는 보험료 직접 선택

산재보험은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 시 발생되는 사고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예술활동, 직업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산재보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 시 위험이 높거나 민간 보험 가입 시 애로사항으로 인해 산재보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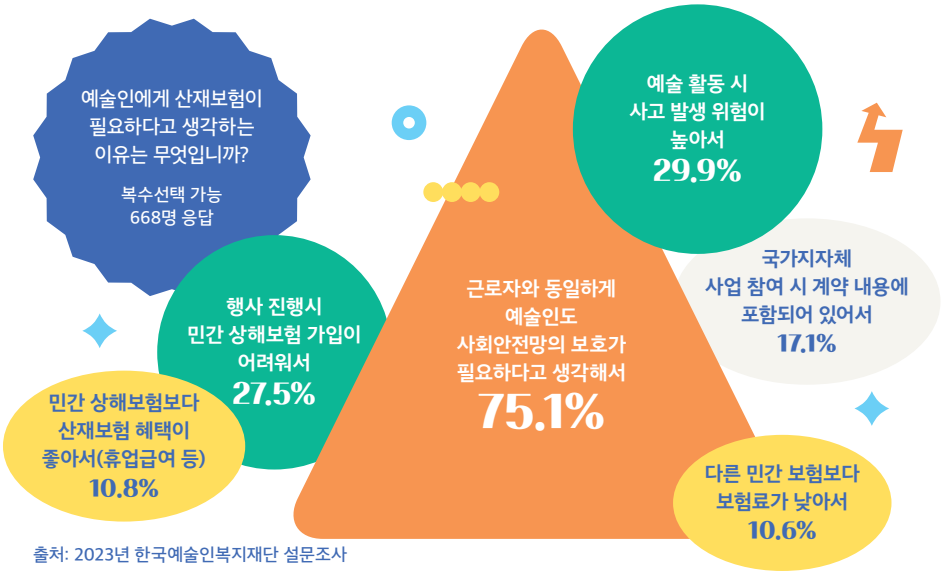

출처: 2023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문조사

또한 예술인의 58.5%가 예술활동 중 사고가 '발생한다'고 응답하는 등
신체를 사용하여 활동하는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 중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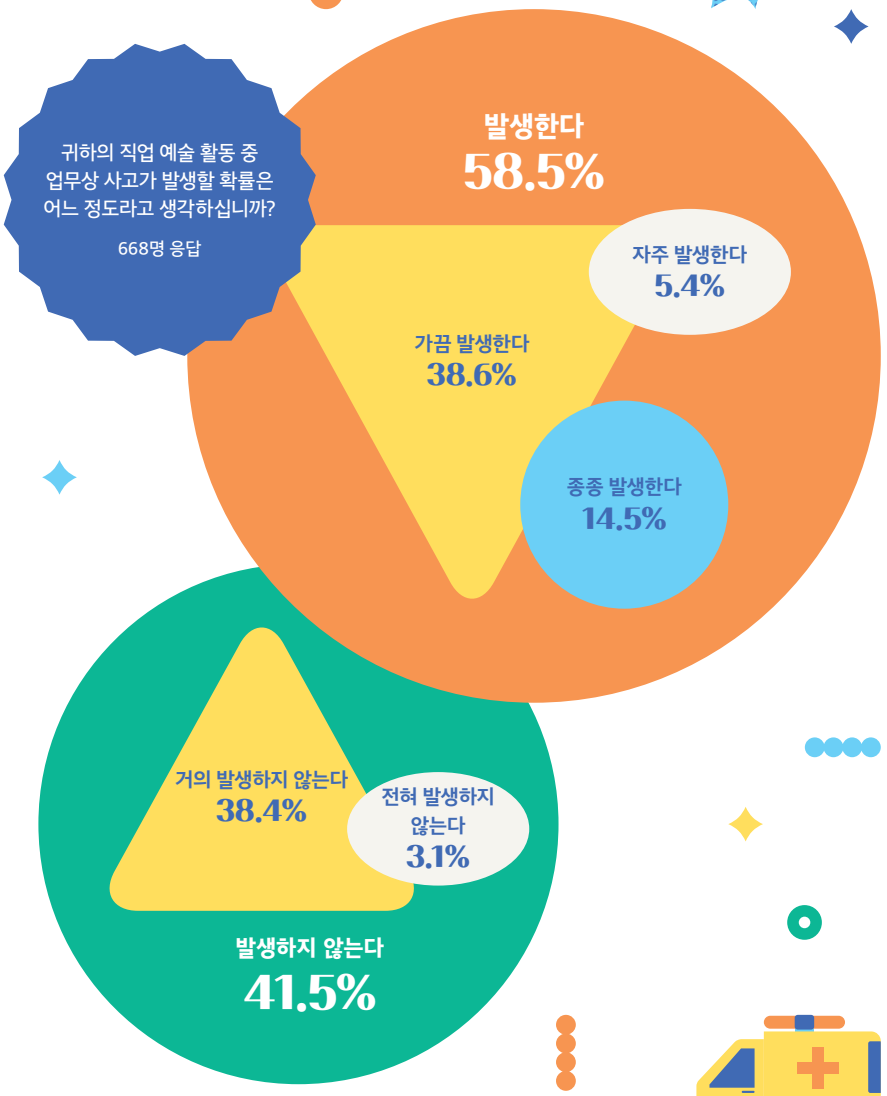

출처: 2023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문조사

왜 예술인에게 산재보험이 필요할까요?

산재보험이

가입하면

산재 발생 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요양급여

산재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급여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진찰부터 치료와 입원, 수술 등의 비용을 지급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로 승인

사례 요양급여 신청

"예술활동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치료비는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6p 참고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으로 예술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해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

1일당 지급액은 산재보험 가입 시 선택한 등급별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사례 휴업급여 지급 예시

"녹화 중 발목을 다쳐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액은 얼마인가요?"

→ 27p 참고

상병보상연금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중증요양상태(1~3급)가 지속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따라 지급

사례 상병보상연금 지급 예시

"드라마 출연 배우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촬영 도중 두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2년이 경과된 후에도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상병보상연금은 얼마인가요?"

→ 28p 참고

장해급여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구분되며,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차등 지급

사례 장해급여 지급 예시

"영화 촬영 중 낙마하는 사고를 당하고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았습니다. 이 경우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경우 받는 장해급여액은 얼마인가요?"

→ 29p 참고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

치료를 끝내고 장해 상태가 중하여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사례 간병급여 지급 예시

"무용수로 공연 중의 재해로 요양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고정되어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택에서 병간호를 받는 경우 장해연금 외에 간병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30p 참고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급여

→ 31p 참고

유족급여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

→ 32p 참고

장례비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장례비용

→ 33p 참고

산재 발생 시 보험 혜택

사례

"방송과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는 배우입니다. 방송 촬영 도중 재해를 입어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요양급여(치료비 등)가 지급됩니다. 또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생활보조금)를 받을 수 있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도 지급됩니다.

산재 승인

혜택을 받은

예술인들이 있나요?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2012년 이후부터** 산재 승인을 받은 예술인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1년 93명, 2022년 109명, 2023년에는 141명**의 예술인이 산재 승인을 통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보상받았습니다.
2023년의 산재 승인율은 95.3%로, 148명이 산재를 청구하여 141명이 승인받고, 약 19억 2천만 원의 보험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실제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의
보상 청구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예술인 산재보험 사이트(wci.kawf.kr)에 업로드 되어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 혜택 이야기
"보호받는 예술인, 안전한 예술활동을 위한!">

산재 보상 사례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스캔을 통해 사례 자세히 읽어보기

1

예술인 산재보험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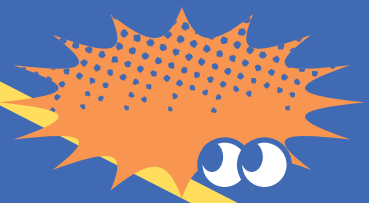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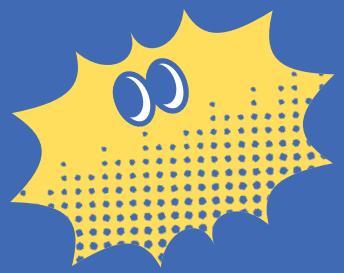

1. 예술인 산재보험은
2. 산재보험 관련 용어 설명
3. 산재보험과 민간보험 비교
4. 산재보험 사무대행과 보험료 지원

FAQ 자주 묻는 질문

① 예술인 산재보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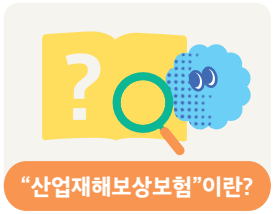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의 과실에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상해보험 등 민간보험에 비해 보상수준이 높습니다. 또한 장해·유족연금제도 및 재요양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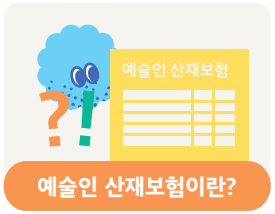

예술인 산재보험이란?

프리랜서 예술인도 중소기업사업주 형태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예술활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프리랜서 예술인들을 위하여 산재보험 사무대행 및 보험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산재보험은 예술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예술인의 권리

국민의 기본권 중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국민이 질병·사망·노령·실업·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경제 활동 능력 상실과 소득의 감소에 처했을 때 보험방식에 따라 보장해준다.

-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 중요양상태·사망·노령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유네스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1980년 발표된 이 권고안은 모든 시민이 각자 역할에 따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처럼, 예술인도 창조적 표현을 책임지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예술인의 역할과 책임에 맞는 사회적 지위를 갖고, 이를 근거로 법적, 사회적, 경제적 이익 및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과학의 특수성, 경영의 특수성처럼, 예술의 특수성 또한 고려되어야 하며 동시에 예술인은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② 산재보험 관련 용어 설명

중소기업사업주

- 예술인은 중소기업사업주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 형태로 보험 가입 시 사업장명은 본인 이름, 사업장 주소는 본인의 주민등록지로 지정함
  ※ 단, 동일·유사 업종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예술인은 해당 사업자등록증 상의 정보로 승인될 수 있음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개요	예술인이 사업장에 소속되어 실질적 근로계약을 하고 월급을 받는 형태의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	예술인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구분 되지 않는 영역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가까운 경우가 많지만, 예술활동의 비정기성과 업무 영역이 모호한 점 때문에 이 직군에 포함하지 않음	예술인 직군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분류하여 중소기업사업주 안에 포함함
적용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자차기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보험료 납부	전액 사용주 부담	사용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50%씩 부담	전액 본인 부담
가입 의무	당연가입	당연가입 원칙이나, 해당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적용 제외 신청 가능	임의가입

임의가입 방식

-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의 경우,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기준보수액, 평균임금

- 기준보수액은 월 소득의 개념으로, 납부할 보험료액 및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됨
- 평균임금은 기준보수액을 30일로 나누어 하루 일당을 산정한 것
- 예술인은 매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실제 수입 또는 계약 금액과는 상관없이 월 보수액 및 일 평균임금을 임의로 선택함

보험료율

- 보험료의 산정기준으로, 보험료를 기준 보험금액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어 이것으로 보험금에 대한 계약자의 비용부담을 정한 것. 업종별로 위험도가 높을수록 보험료율이 높아짐
- 기준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월 보험료 산출

③ 산재보험과 민간보험 비교

생명보험+상해보험+실손의료보험+여행자보험
➔ 산재보험은 예술활동 중 재해에 대해 민간보험 대비 포괄적, 통합적 보장 혜택 제공

보장 금액 한도, 기간 제한 없음!

가입 시 연령 제한, 위험 고려 없음!

- 가입 연령 제한 및 연령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없음
- 상해 위험이 높은 일부 직군의 경우, 민간 상해보험 가입·갱신을 거절당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있으나 산재보험은 상해 위험에 따른 가입에 제한이 없음

구분	공적 보험	민간 보험		
	산재보험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	업무 중(예술활동 중) 발생한 부상 및 질병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상해사고	외출 여가 중에 발생한 질병 및 상해사고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가입 대상	나이, 병력, 장애여부, 직업위험성 등에 따른 보험가입제한 및 보험료 인상 없음	나이, 병력, 장애여부, 직업위험성, 소득 등을 고려하여 납부보험료 책정하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음		
요양급여 (치료비)	O (치료비 정액보상, 지급한도 없음)	O (약관에 따른 치료비 정액보상, 지급한도 있음)		
휴업급여 (생활비)	O (요양(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지원)	X		
장해급여 (장해보상)	O (장해등급 및 보험가입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O (약관에 따른 정액보상)		X
유족급여 (사망시)	O (산재로 사망 시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52~67%를 매월 지급)	O (약관에 따른 정액보상)		X

④ 산재보험 사무대행과 보험료 지원

크고 작은 사고에 무방비하게 놓여 있는 프리랜서 예술인에게

행정업무 어려움 해소를 위한 **보험 사무대행** +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납부보험료 환급 지원**

지원 대상

가입지원 대상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에 해당되는 업무내용으로 신청 가능

보험료지원 대상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 가입한 경우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보험사무위탁을 완료하면 보험료 지원 가능

지원 내용

보험 사무대행

가입, 정보변경, 해지 신청 대행 및 관련 상담

보상관련 상담

산재 보상관련 일반 상담 및 전문가 연계 상담

보험료 지원

매월 납부한 보험료의 50~90% 분기별 환급 지원
1등급 신규가입자는
가입 첫 6개월간 90% 지원, 이후 50% 지원,
1등급 재가입자 및 2~12등급 가입자는 50% 지원
(해지 시까지)

보험료 지원 일정 분기별 환급 지원

보험료 납부 월 예술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환급월 재단	5월			8월			11월			2월		

- 해당 분기 마지막 월의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산정하여 환급 지원
- 전 분기 미납액 납부금이 있는 경우 다음 분기에 납부한 보험료 확인하여 환급 지원
- 예술인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후 재단에서 보험료 완납 여부를 확인 후 환급 지원
  ※ 미납 및 일부금액만 납부한 월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음
  ※ 보험료 납부여부는 재단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직접 확인하므로, 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한 별도 절차 없음

2

산재보험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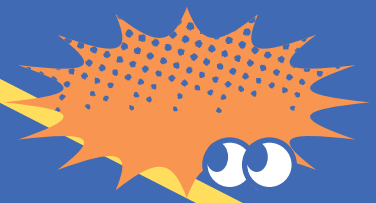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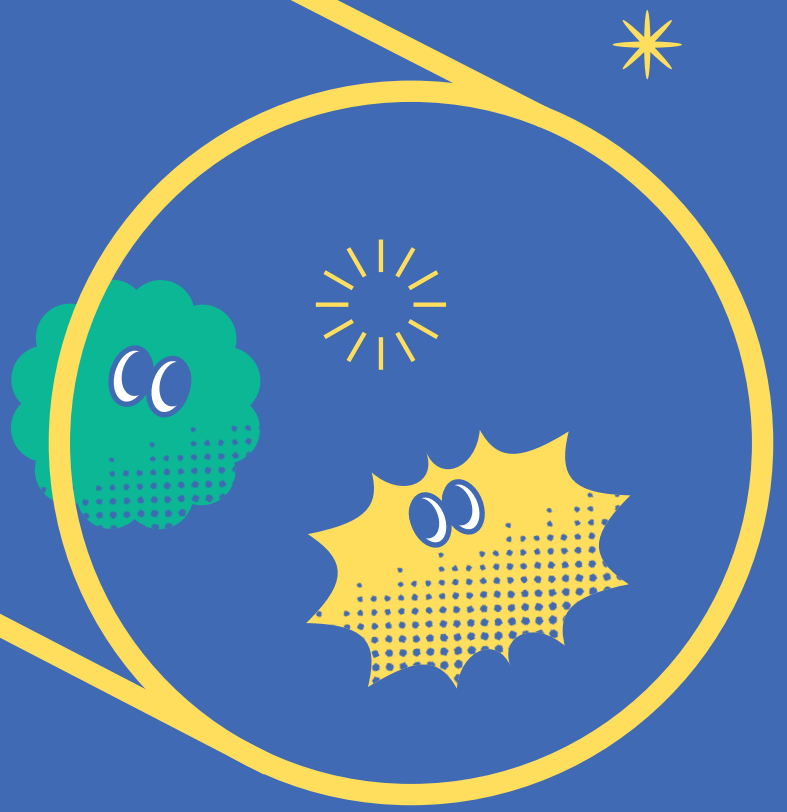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상병보상연금
4. 장해급여
5. 간병급여
6. 직업재활급여
7. 유족급여
8. 장례비

FAQ 자주 묻는 질문

① 요양급여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

요양급여의 지급 요건

-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급

요양급여의 범위

- 진찰 및 검사
-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재활치료
- 입원
- 간호 및 간병
- 이송

요양급여 산정 기준

-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등 산정 기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름

※ 치료비(비급여대상* 제외)는 산재 승인이 나면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수령하며, 본인이 먼저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는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 가능

*비급여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조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요양급여
③ 상급병실 사용료(부득이한 경우 제외)

요양급여의 한도

"예술활동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치료비는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의 경우, 민간 보험처럼 일정 금액의 의료 비용을 지원하는 한도 기준이 없음.
소정의 심사 절차를 통해 업무상 재해 여부가 판단되면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의 요양 급여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

②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으로 예술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해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

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으로 '4일 이상 활동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

휴업급여 산정 기준

- 산재를 당하여 치료를 받는 기간에 생활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가입 시 선택한 등급별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보수액은 산재보험 가입 시 선택한 등급과 월 보험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많이 납부할수록 휴업급여액이 커진다.
예) 1등급 가입 시 기준보수액 2,405,840원의 70%인 약 168만원이 지급되고,
12등급 가입시 기준보수액 7,727,290원의 70%인 약 541만원이 지급된다.
(1개월 기준)

휴업급여 지급 예시

"지난 해 기준보수 6등급으로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한 방송인입니다.
녹화 중 발목을 다쳐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지난 1월 21일 사고 시부터 2월 20일까지
요양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액은 얼마인가요?"

{158,180원 × 70%} × 30일 = 3,321,780원
6등급 일 평균임금 / 1.22.~2.20.

6등급의 일 평균임금은 158,180원이므로 휴업급여액은 3,321,780원 지급('24년 기준)

③ 상병보상연금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중증요양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요건

-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②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할 것
  ③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

상병보상연금표

중증요양상태등급	상병보상연금
제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제3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름

상병보상연금 지급 예시

"드라마 출연 배우입니다. 기준보수 6등급으로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2022년 3월 1일 촬영 도중 두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해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2년이 경과된 2024년 3월 1일 이후에도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상병보상연금은 얼마인가요?"

이 경우는 중증요양상태 등급 1급에 해당

158,180원 (6등급 일 평균임금) × **329일** (중증요양상태 1급 연금일수) ÷ 365일 = **142,570원** (1일 당 상병보상연금액)

6등급의 일 평균임금은 158,180원이고, 중증요양상태 1급 연금일수 329일을 365일로 나눈 금액 142,570원이 1일 당 상병보상연금액이며, 매월 산정하여 지급('24년 기준)

④ 장해급여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장해급여의 지급 요건

-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
  ※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함
  ※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함

장해급여 종류

구분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등급별 보험급여 지급대상	제1급~제3급	
	제4급~제7급	
		제8급~제14급

※ 장해등급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함

장해급여 산정 기준

- 장해급여액은 장해등급 심사 후 최고 1급에서 최저 14급까지 차등 지급하며,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 일수 및 산재보험 가입 당시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
- 장해급여는 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일시금 일수 또는 연금 일수만큼 지급

장해급여 지급 예시

"기준보수 6등급으로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한 영화배우입니다.
모 영화사와 사극 영화 출연 계약을 체결한 후 영화촬영 도중 낙마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보험 덕분에 요양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사고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운동기능에 영구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받을 수 있는 장해급여액은 얼마인가요?"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게 된 경우, 장해등급 7급에 해당됨
장해등급 제4급부터 제7급까지의 수급권자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중 선택 가능

장해보상연금으로 신청할 경우
158,180원 (6등급 일 평균임금) × **138일** (장해등급 7등급의 연금일수) ÷ **12개월** = **월 1,819,070원** (연금지급액)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신청할 경우
158,180원 (6등급 일 평균임금) × **616일** (장해등급 7등급의 일시금일수) = **97,438,880원** (일시금 지급액)

5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

구분	지급 대상
상시 간병 급여	①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②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수시 간병 급여	③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④ 장해등급 제1급(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간병급여 지급 금액

구분	상시 간병급여	수시 간병급여
전문간병인	44,760원	29,840원
가족·기타간병인	41,170원	27,450원

※ 간병급여의 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들어가 간병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간병급여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
※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 미지급

간병급여 지급 예시

"무용수로 활동 중인 저는 기준보수 6등급으로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 후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양 후에도 증상이 고정되어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해 자택에서 병간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장해연금 외에 간병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수시 간병급여 지급 대상
1일 수시 간병급여 금액(27,450원) × 간병 기간에 대해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별도 지급

6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급여

직업재활급여 지급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①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 또는 산재승인 후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② 취업하고 있지 않은 사람일 것
③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을 것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직업재활급여 지급 내용

구분	지급 기준 및 내용
직업훈련비용	• 직업훈련은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 • 직업훈련비용은 직업훈련을 실시한 직업훈련기관에 지급
직업훈련수당	•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에서 훈련대상자의 출석률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 훈련기간 또는 시간에 대한 세부 기준에 따라 지급 •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 다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미지급

7 유족급여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

유족급여 수급자격자

구분	자격 기준
유족보상연금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자녀(25세미만), 부모(60세이상), 손자녀(25세미만), 조부모(60세이상), 형제자매(19세미만 또는 60세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름

유족급여의 지급 방법

구분	지급 방법
유족보상연금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게 지급
반액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유족보상일시금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

유족급여의 지급 금액

•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이며,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을 매월 지급

구분	지급 금액
유족보상연금액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의 47%) + 가산금액(급여기초연액의 5%~20%)
유족보상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8 장례비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장례비용

장례비 지급

• 유족 또는 유족이 아닌 사람에게 기준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

구분	유족이 장례를 지낸 경우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
지급대상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유족의 행방불명 등으로 부득이하게 장례를 지낸 유족 외 사람
지급액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

• 장례비 지급 기준은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름
※ '24년 기준 장례비 최고금액 18,125,360원, 최저금액 13,053,080원

장례비 지급 예시

"동료인 뮤지컬 배우가 기준보수 2등급으로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공연 출연 도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이 없어 동료인 제가 장제를 진행했고 장례보조비는 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장례비용은 얼마인가요?

유족이 아닌 동료가 장제를 행했을 경우

2등급 평균임금 94,740원의 120일분 11,368,800원의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 5,000,000원을 지급

유족인 배우자가 장제를 행했을 경우

2등급 평균임금 94,740원의 120일분 11,368,800원이며, 실제 소요금액이 장례비 최저금액 기준에 미달하여 최저금액인 13,053,080원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산재보험의 혜택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하시면 재단 산재보험 담당자가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 접수를 하게 됩니다. 보험 혜택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접수를 한 다음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Q2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예술활동과 관련된 재해(통상의 출퇴근재해 포함)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은 가입일 이후 예술활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재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진료비는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나요?

A 산재보험의 경우 민간 보험처럼 일정 금액의 의료비용을 지원한다는 한도 기준이 없습니다. 소정의 심사 절차를 통해 업무상 재해 여부만 판단이 되면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요양급여 범위 및 기준에 따라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Q4 우울증이나 정신질환도 보장해 주나요?

A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예술활동 과정에서 발병되거나 악화되어 발현된 것으로 명확한 재해발생경위 등이 입증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Q5 해외에서의 예술활동 중 다쳤을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산재보험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발생된 사고는 국내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보수를 목적으로 한 예술활동에 따른 해외 출장은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 등을 요청하여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Q6 **연극 출연 계약 후 사설학원에서 교습을 받던 중 다쳐도 적용이 되나요?**

A 예술활동 계약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는 예행연습, 단체 연습(리허설 등), 대관 장소에서의 연습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극단에서 개인교습(사설학원) 장소를 지정해 주고, 비용을 지급하는 과정 중 발생한 재해라면 역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 청구 과정에서 해당 교습이 예술활동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7 **출연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나, 구두로 출연을 확정하고 연습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출연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지만 작품 출연이 결정되어, 공연 제작사를 통해 연습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 심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기록이나 목격자 진술 등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8 **예술활동 중에 폭행을 당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예술활동 중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인정 기준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활동과 관련 없는 사적인 사유로 인한 다툼 등으로 발생된 제3자의 폭행은 산재보험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0. 1. 7. 개정)
> **제33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Q9 **예술활동을 위해 촬영장으로 가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2016년 9월 29일부터 특정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기 전 또는 업무완수 후 자택 등으로 복귀하는 과정(출퇴근과 유사한 해석)에서 발생된 교통사고 등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을 위해 업무 수행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업무 진행 중 A 촬영장에서 B 촬영장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업무의 연장 과정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 통상적이지 않은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에는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①	촬영을 마친 후 회사 지원 차량으로 집으로 이동할 경우 (통상적인 출퇴근길) ➔ **통상적인 출퇴근 중의 사고는 산재보험 혜택이 가능**	O
예시 ②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상 지시에 따라 촬영장에서 다음 촬영장으로 이동할 경우 ➔ **업무의 연장 과정 중 사고로 산재보험 혜택이 가능**	O
예시 ③	주체가 다른 두 개의 계약에 의하여 한 촬영을 마친 후 다른 계약에 의한 촬영장으로 이동할 경우 ➔ **하나의 계약에 의해 업무 완수 후 복귀하는 과정, 또 다른 계약에 의해 특정 업무 수행 장소에 도착하기 전의 사고는 산재보험 혜택이 가능**	O
예시 ④	촬영을 마치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약속장소로 이동할 경우 ➔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에는 산재보험 보상 경우가 아님**	X

휴업급여, 유족급여

Q10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사진작가입니다. 활동 중 재해를 당해 병원에서 휴업급여를 받으며 요양하는 중에 취업하면 휴업급여가 중단되나요?**

A 부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부분 휴업급여 신청을 원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부분 휴업급여는 산재를 당한 예술인이 취업이 명백히 가능한 상태임에도 휴업급여 수급을 위해 의도적으로 취업을 회피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요양 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취지에서 운영(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

Q11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유족은 배우자 없이 보수 6등급의 25세 자녀 1명입니다.**

A 자녀 연령이 25세 이상이므로 유족보상일시금 대상이며, 지급 금액은 '평균임금×1300일'로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158,180원(6등급 평균임금)×1300일=205,634,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Q12 **유족보상연금의 대상은 어떻게 되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으로, 배우자(사실혼 포함), 부모 또는 조부모로 각각 60세 이상인 자,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 등입니다.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은 사망하거나 배우자가 재혼(사실혼 포함)하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등에 상실됩니다.

3

가입·납부 변경·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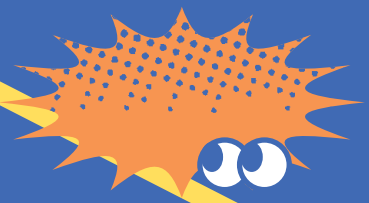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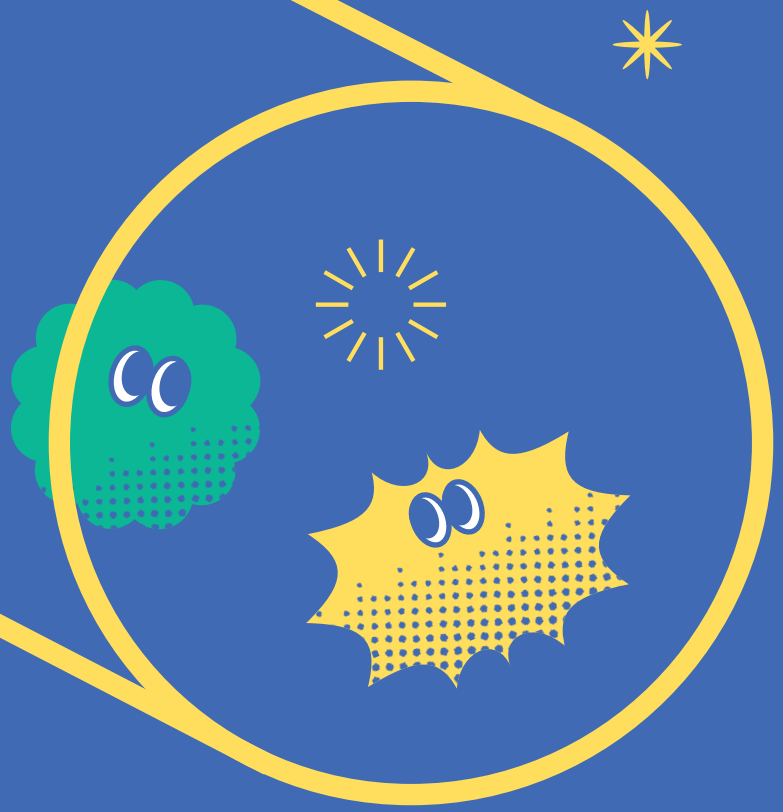

❶ 보험 가입 신청
❷ 보험료 선택 및 납부
❸ 변경 및 해지

FAQ 자주 묻는 질문

1 보험 가입 신청

예술인 산재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보험사무대행과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함

가입 절차 및 기관별 담당 업무

예술활동증명 신청·완료

예술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술활동증명 신청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는 바로 산재보험 가입 신청 가능,
미완료자는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 후
동시에 산재보험 가입 신청 가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접수 및 심의

산재보험 가입 신청

예술인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을 통해
가입신청

서류 접수 & 가입 대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서류 접수 및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 대행

산재보험 가입 승인

근로복지공단
가입 승인,
보험료 산정

보험료 고지서 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징수,
고지서 발행, 자동이체,
가상계좌 발급

서류 준비 및 가입 방법

서류준비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보험료 환급용 통장사본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 보험료 환급용 통장사본
-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용 예술활동 계약서 또는 실적자료 1건

예술활동증명을 처음 신청하거나 미완료인 경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회원가입 [로그인] ➔ 예술활동증명 신청하기/재신청하기 ➔ 기본정보 입력 ➔ 예술활동증명 내용-예술활동증명 방법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 선택 ➔ 계약서 또는 실적자료 첨부 ➔ 신청하기
※ 예술활동증명 방법 중 산재보험 특례는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한정적인 절차로 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일반 예술활동증명을 재신청해야 함

가입방법

온라인 신청
-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 wci.kawf.kr ➔ 가입신청

오프라인 신청
- 전자우편, 우편, 방문 접수

신청서 및 사무위탁서 작성 후 제출
신청서 양식: 재단 누리집 ➔ 사업안내 ➔ 예술인 산재보험 ➔ 가입방법에서 내려받기
※ 신청서 작성방법 49~52p 참고
※ 원로예술인, 장애예술인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방문신청 희망 시 사전 문의 필수

전자우편
- insure@kawf.kr

우편·방문
- (04637)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② 보험료 선택 및 납부

매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의 보험 유지에 부담이 없도록,
기준보수액(등급) 및 월 보험료를 실제 수입과 상관없이 예술인이 직접 선택하여 납부

보험료 선택

- 기준보수액과 월 보험료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등급을 선택하여 가입 신청
- 높은 보험료를 낼수록 산재보험 급여혜택이 커짐
  ※ 요양급여는 모든 등급 혜택 동일, 요양급여를 제외한 다른 보험급여는 기준보수액에 따라 보상액이 상이함

2024년 중소기업사업주(예술인) 기준보수액 및 등급별 보험료

구분	기준보수액 (1개월)	평균임금 (1일)	월 보험료	
			창작/실연/기술지원 6.6/1000	사업서비스 직군 8.6/1000
1등급	2,405,840원	78,880원	15,870원	20,690원
2등급	2,889,600원	94,740원	19,070원	24,850원
3등급	3,373,370원	110,600원	22,260원	29,010원
4등급	3,857,140원	126,460원	25,450원	33,170원
5등급	4,340,910원	142,320원	28,650원	37,330원
6등급	4,824,680원	158,180원	31,840원	41,490원
7등급	5,308,450원	174,040원	35,030원	45,650원
8등급	5,792,220원	189,900원	38,220원	49,810원
9등급	6,275,990원	205,760원	41,420원	53,970원
10등급	6,759,750원	221,620원	44,610원	58,130원
11등급	7,243,520원	237,490원	47,800원	62,290원
12등급	7,727,290원	253,354원	51,000원	66,450원

직업군에 따른 보험료 차이

-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고용노동부령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업무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여 결정함
- 2024년 기준, 예술인 직업군은 대부분 6.6/1000을 적용 받으며, 일부 기획스태프(공연대리인, 큐레이터 등) 직군은 사업서비스업 등으로 분류되어 8.6/1000 요율을 적용 받음

월 보험료 계산

- 1~12등급의 등급별 기준보수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납부

월 보험료 = 기준 보수액 × 보험료율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대부분의 예술직군 6.6/1000

보험료율

일부 기획 스태프 직군 8.6/1000

음악 연주자가 6등급으로 가입한 경우,
기준보수액은 4,824,680원, 보험료율은 6.6/1000이므로
월 보험료는 4,824,680원 × 6.6/1000 = 31,840원

보험료 납부 방법 (택 1)

고지서 납부

매월 20~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우편물수령지로 고지서 발송.
납부마감일은 10일까지, 10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 분실, 미수령, 장기 미납 보험료 납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 '산재보험료 납부' 요청 시 문자로 가상계좌 발급

자동이체 납부

매월 직접 이체가 번거로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 산재보험료 납부 자동이체 신청

예술인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

예술인의 직업군 (예시)			적용 사업종류	보험료율
창작 예술가	작가	시인, 소설가, 평론가, 수필가, 극작가, 드라마작가, 구성작가, 시나리오작가, 작사가, 게임시나리오 작가, 만화 스토리 작가	예술전문서비스업 (90708)	6.6/1000
		문학번역가, 영상번역가	그 외 기타 기술 서비스업(90713)	
	화가 조각가	화가, 서예가, 단청원, 탱화원, 회화복원가, 조각식각가, 식각사, 만화가, 애니메이터, 미디어 아티스트	예술전문서비스업 (90708)	
	작곡가	작곡가, 편곡가, 관현악 편곡가, 음악 각색가, 국악 작곡가, 국악 편곡가	예술전문서비스업 (90708)	
	안무가	안무가	예술전문서비스업 (90708)	
	사진가	사진작가, 사진가(사진기자 제외)	사진 촬영 및 처리업(90712)	
	건축가	건축가, 건축사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90709)	
	디자이너	제품디자이너, 직물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 액세서리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 디스플레이어, 무대 및 세트디자이너, 광고디자이너, 포장디자이너, 북 디자이너, 삽화가, 색채 전문가, 활자디자이너, 웹디자이너,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게임그래픽 디자이너	전문디자인업 (90711)	
	공예가	도자기 공예가, 조화 공예가, 목 공예가, 석 공예가, 양초 공예가, 종이 공예가, 그 외 공예가, 귀금속 세공원, 보석 세공원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사업(90716)	
실연 예술가	무용수	발레각색가, 무용수, 발레무용수, 대중무용수, 백댄서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사업(90716)	6.6/1000
	연주가 및 성악가	연주가, 목관악기 연주가, 타악기 연주가, 금관악기 연주가, 건반악기 연주가, 현악기 연주가, 성악가, 가수, 합창단원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사업(90716)	
	감독 및 지휘자	연극 연출가, 영화 감독, 방송 프로듀서, 공연장 예술감독, 관현악단 지휘자, 합창단 지휘자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사업(90716)	
	배우	연극배우, 탤런트, 영화배우, 성우, 코미디언, 개그맨, 만담가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사업(90716)	
	국악인 및 전통 예능인	국악인, 소리꾼, 국악 연주가, 전통 연극인, 전통 무용인(전통무예인은 제외)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사업(90716)	
	기타 실연예술가	곡예사, 마술사, 비보이, 모델, 보조 연기자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사업(90716)	
기술 스태프	기획 스태프	공연 대리인, 전시기획자, 화랑 관리인, 박물관 관리인, 큐레이터	사업서비스업 (90104)	8.6/1000
		미술품 감정사	그 외 기타 기술 서비스업 (90713)	6.6/1000
		예술품 중개인, 예술품 경매사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91001)	8.6/1000
	기술 스태프	편집감독, 조명감독, 촬영감독, 음향감독, 무대감독, 촬영기사, 영사기사, 조명탁조정원, 녹화기사, 편집기사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사업(90716)	6.6/1000
	그 외의 예술 스태프	무대의상관리자, 소품담당자, 연출보조원, 분장사, 무대가발 담당자, 특수분장사, 입장권 판매원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사업(90716)	

3 변경 및 해지

정보 변경, 월 보험료 변경, 보험 해지 등이 필요한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변경 또는 해지 접수

거주지, 전화번호 등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 ➔ 사무대행 ➔ '보험관계 변경'을 통해 변경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 담당지사가 정해지므로, 주소 이전 시 즉시 변경신청 필수

월 보험료 변경을 원할 경우

- 매년 12월 말부터 다음해 1월 말까지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월 보험료) 변경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외에는 변경 불가
- 12월 중 신청자는 1월분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되며, 1월 중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됨
  -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 ➔ 사무대행 ➔ '보험관계 변경'을 통해 변경 신청

보험 해지를 원할 경우

- 보험을 가입한 연도가 지난 경우에만 해지 가능하며, 보험 가입 당해 연도에는 해지 불가
  -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 ➔ 사무대행 ➔ '보험관계 해지'를 통해 해지 신청

서식 1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23. 6. 30.>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근로자 사용 여부(해당 ☑)	근로자 사용 ☐	근로자 미사용 ☑

(앞쪽)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상호(법인명)	한 예 복 (본인 이름)		
	소재지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재)		
	우편물 수령지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3층 (실 거주지/보험료 고지서 수령지)		
	전화번호	031-0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사업지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근로자수		전자우편주소	insure@kawf.kr
사업주	성명	한 예 복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987654-1234567
	주소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재)		
가족종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주와의 관계	☐배우자 ☐부모·자녀 ☐그 밖에 4촌 이내의 친족 ( )	휴대전화	
보험가입 신청내용	기준보수액	8 등급(5,792,220 원) ※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 선택		
	업무 내용	연기자, 조명스태프, 연극연출, 구성작가, 만화가, 무용수, 성악가, 큐레이터, 석공예가, 드럼연주, 작곡가 등 ※ 본인의 주요 예술활동 내용 작성		
	근로시간	부터 까지		
	특정업무 종사여부	[ ]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 ]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 ] 납 업무 [ ]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		
	특정업무 종사경력	최초 종사연월	년 월	
		종사한 기간의 합계	년 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중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퀵서비스업자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 보유 여부		
		[ ] 예	[ ] 아니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한 예 복 (서명 또는 인) 한 예 복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건강진단서 1부(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분진·진동·납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에 따른 판결문 또는 인우보증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직원 확인사항	가족관계증명서(가족종사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보험관계 성립일		승인 여부	[ ]승인 [ ]불승인
건강진단 실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신청인 란
가입신청자의 인적사항 작성
*사업장(상호)명은 본인 이름

2 보험가입 신청내용
보험료 기준보수액표 참고하여 본인이 원하는 등급 기재

3 서명인 란
서명·날인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급여 청구 등의 절차 상 불이익 없음
동의여부 체크 후 서명 또는 날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필수)
산재보험 가입 업무처리 관련 행정정보 확인에 대한 동의여부 체크 후 서명 또는 날인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를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④ 등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한 예 복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직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한 예 복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신청에 대해 공단이 승인한 경우 그 신청서의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합니다.
2. 가족종사자란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 포함)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사람(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은 제외됩니다.
3.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임금액 및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으며,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를 적용이 제외됩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산재보험료 체납기간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보험관계 해지 의사가 없는 한 계속하여 보험관계가 유지됩니다.
7. 보험가입을 신청한 해당 연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8.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매년 1월말까지만 변경이 가능하고 연도 중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작성방법

1.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란은 근로자 고용으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산재보험 보험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근로자수'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3. '가족종사자'란은 가족종사자에 대하여 별도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각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업무 내용'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자신이 하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6. '근로시간'란에는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정해진 근무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을 적습니다.
7.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로서 하는 업무가 '특정업무 종사여부'란에 열거된 특정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특정업무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8. '특정업무 종사경력'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로서 하는 업무가 '특정업무 종사여부'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예정자가 과거에 해당 특정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특정업무에 최초 종사한 연월 및 종사한 기간의 합계를 적습니다.
   ※ 특정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업무 종사여부'란과 '특정업무 종사경력'란은 적지 않습니다.
9.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1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 확인서

성 명	한 예 복 (본인 이름)	생 년 월 일	987654 (주민번호앞자리)
사업장명	한 예 복 (본인 이름) ※ 사업자등록이 없을 경우 이름/업종(예시: 홍길동/도매업)으로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을 경우 "없음"으로 기재

다음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읽어보시고 충분히 이해하신 후에 □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중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

등급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등급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2,405,840	78,880	7등급	5,308,450	174,040
2등급	2,889,600	94,740	8등급	5,792,220	189,900
3등급	3,373,370	110,600	9등급	6,275,990	205,760
4등급	3,857,140	126,460	10등급	6,759,750	221,620
5등급	4,340,910	142,320	11등급	7,243,520	237,490
6등급	4,824,680	158,180	12등급	7,727,290	253,354

가. 보수액은 본인의 **실제 소득과 무관**하며, **상기 보수액 중 본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급별 보수액(월)이 적용됩니다.**
나. **등급별 보수액(월)** 등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보수액 변경됨)**하며, **매년 등급(보수액)**은 **해당 보험 연도의 1월 말 일**까지만 **변경 가능**(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년 등급 유지)하고, 선택 후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2 가입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 중·소기업 사업주가 **장소를 달리하여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모두 가입**하여야 모든 사업에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나. **건설업 사업주**의 경우 **본사(사무실)**와 **현장**을 **각각 가입**하여야 모든 재해에 대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다. 보험가입을 **신청한 당해 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능**(폐업 제외)합니다.
라. 2023.7.1.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전속성 기준이 폐지**되어 비전속 업무 수행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산재보험법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

가.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매달 10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이 가능함

나. **보험료가 체납**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소멸**할 수 있으니, **법정 납부기일까지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월 보험료의 납부기일이 2.10.이고 1월 보험료를 4.10.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2.11.부터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공단에서 보험관계를 직권 소멸 조치함

위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2024 년 0 월 0 일

신청인 : 한 예 복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장 귀하

1 신청인 란
가입신청자의 인적사항 작성

2 체크란
산재보험 관련 내용 읽고 1~3번 □에 √표시

3 서명인 란
서명·날인 필수

서식 2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서

*가입신청서와 함께 제출

[별지 제43호 서식]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서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한 예 복 (본인 이름)	상시사용근로자수
소재지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본인 주민등록지)			전화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010-0000-0000	사업의 종류

위탁사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 및 석면피해구제 포함)관련 사무
1. 보수총액 및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에 관한 사무
2. 보험료 신고에 관한 사무
3. 보험관계 성립, 변경, 소멸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기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보험사무
5.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및 근로내역확인 신고 등 피보험자관리에 관한 사무(고용보험에 한함)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상기 위탁사항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받는 것에 동의 함

사무처리 시작 연월일	(예정) 년 월 일

위와 같이 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 ]고용보험 [V]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 및 석면피해구제 포함) 사무의 처리를 위탁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위탁사업주 주소 (본인 주민등록지)

성명 한 예 복 (서명 또는 인)

_____보험사무대행기관 대표 귀하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 및 석면피해구제 포함) 관련 사무 수탁을 [ ]승낙 [ ]불승낙 합니다.

불승낙 사유	
보험가입자 사업장관리번호	

년 월 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명 칭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_____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사업장명**
본인 이름 기재
*예술인은 개인 인적사항을 기반으로 1인 사업장과 같은 개념인 중소기업 사업주 형태로 보험에 가입함

2 **소재지**
가입신청서에 작성한 주소지와 동일 주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3 **전화번호**
본인 휴대폰번호 작성

4 **서명인 란**
서명·날인 필수

서식 3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보험 유지 중 거주지, 전화번호 등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작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7. 1.>

[ ]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V]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사업개시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900-00-00000-0	전화번호 010-0000-0000
	명칭 한 예 복 (본인 이름)	
	소재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험사무대행기관 (고용·산재)	명칭	번호
사용자 (대표자)	성명 한 예 복 (본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987654-1234567

사용자 (대표자/공동대표자)	변경항목	변 경 일	변 경 전	변 경 후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변경항목	변 경 일	변 경 내 용
	명칭		
	전화번호		
	휴대전화	2024.00.00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 기재)
	FAX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2024.00.00	(변경된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우편물 수령지	2024.00.00	(변경된 우편물 수령지 주소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종류(업종)		
	사업의 기간		
	그 밖의 사항		

건강보험증 수령지	[ ]사업장 주소지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4 년 00 월 00 일

신고인(가입자) 한 예 복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 **기본 인적사항**
사업장·사용자는 본인 이름 기재
*사업장관리번호 모르면 비워두기

2 **변경사항**
변경항목 선택하여 변경일, 변경내용 기재

3 **서명인 란**
서명·날인 필수

서식 4 기준보수(등급) 신고서

- 매해 12월 말~다음해 1월 말 보험료 등급 변경 희망자만 신청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1.8.31., 2022.2.9>

[V] 중·소기업사업주 / [ ] 가족종사자 —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신고서

※ 뒤 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중소기업사업주 등 사업장관리번호	900-00-00000-0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사업주)	상호(법인명)	한 예 복 (본인 이름)	
	소재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전화번호 010-0000-0000
	상시 근로자수		E-mail abcdefg@kawf.kr
	대표자	한 예 복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987654-1234567
가족종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준보수신고 등급 및 보수	10 등급(6,759,750 원) (변경을 희망하는 등급 작성)

(2024)년도 기 준 보 수 액

중소기업사업주 구분	고시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가족종사자 구분	고시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2,405,840	78,880	1등급	2,405,840	78,880
2등급	2,889,600	94,740	2등급	2,889,600	94,740
3등급	3,373,370	110,600	3등급	3,373,370	110,600
4등급	3,857,140	126,460	4등급	3,857,140	126,460
5등급	4,340,910	142,320	5등급	4,340,910	142,320
6등급	4,824,680	158,180			
7등급	5,308,450	174,040			
8등급	5,792,220	189,900			
9등급	6,275,990	205,760			
10등급	6,759,750	221,620			
11등급	7,243,520	237,490			
12등급	7,727,290	253,35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2024 년 0 월 0 일

신고인(보험가입자) 한 예 복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수			
등급		기준보수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본 인적사항
상호명·대표자는 본인 이름 기재
*사업장관리번호 모르면 비워두기

2 변경사항
기존의 본인 등급에서 변경을 원하는 등급과 보수액 작성

3 서명인 란
서명·날인 필수

서식 5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 보험 가입유지의사가 없는 경우 산재보험 해지신청서 작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7. 1.>

국민연금 [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 ]소멸신고서 [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 ]소멸신고서 [V]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900-00-00000-0		
	명칭 한 예 복 (본인 이름)		전화번호 01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우편번호(12345)
	환급(반환) 계좌 사전신고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
		예금주명 한예복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무 대행기관 (고용·산재)	명칭		번호
사용자 (대표자)	성명 (한 예 복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987654-1234567
	주소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우편번호(12345)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010-0000-0000
신고(신청) 사유	공통사항(중복선택불가) [ ]폐업 [ ]통폐합 [ ]사업 종료 [V]그 밖의 사유 (가입유지의사 없음)		
	국민연금·건강보험 [ ]휴업 [ ]근로자 없음		
	고용·산재보험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		
	※ 마지막으로 지역성립한 근로자의 성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보험관계를 소멸할 수 있습니다.		
사유 발생일자 2024.00.00.	※ 근로복지공단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해지처리됨에 유의		
탈퇴(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실 거주지/우편물 수령지 주소 기재)			우편번호(12345)
국민연금	휴업기간		탈퇴일
	통폐합 시 흡수하는 사업장 명칭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건강보험	근로자 수		탈퇴일
고용/산재	산재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고용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뒤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2024 년 00 월 00 일

신고인·신청인(가입자) 한 예 복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 기본 인적사항
사업장·사용자는 본인 이름 기재
*사업장관리번호 모르면 비워두기

2 신고(신청)사유
'그 밖의 사유'-가입유지 의사없음으로 설정

3 사유발생일자
해지신청일자 작성, 공단에서 접수한 사유발생일자 다음날부터 보험관계 소멸 처리됨

4 서명인 란
서명·날인 필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13 예술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A 산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마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미 개별적으로 중소기업사업주(예술인) 형태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재단을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14 직장을 다니면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입니다.
직장 4대 보험 가입자가 예술인 산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 업무 이외에 프리랜서 예술활동을 하신다면 해당 산재보험은 별도로 가입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예술활동을 하며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직장 산재보험에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Q15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진작가인데,
최근 한 기업의 홍보실 사진 담당자로 입사 예정입니다.
직장 산재보험 가입 예정자인데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나요?

A 해당 직장의 사진 담당자로서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과 별도의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16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2020.1.7.)으로 예술인이 산재보험을 가입할 때 별도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없으며 보험료지원을 위한 통장사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의 경우에는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을 위한 예술활동 실적자료 1건 또는 날인된 예술활동 계약서 전문이 필요합니다.

Q17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예술 단체의 대표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 사무대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문화예술분야 외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에도, 프리랜서 예술인으로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업무내용이 「예술인 복지법」상 인정되는 예술활동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Q18 원로 화가인데 대리인을 통해서 가입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로예술인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으나, 본인에게 산재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는 동일합니다.

Q19 재단을 통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으로 바로 가입신청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재단에서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보험가입 이후에도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예술인이 재단을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면 사무위탁 시점 이후부터 부과된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 > 사무대행 > '보험사무 위탁 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Q20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민간의료보험은 해지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산재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은 별개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만 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업무와 무관한 질병과 사고(출퇴근이나 출장이 아닌 교통사고, 천재지변에 따른 재해 등)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보장해주는 민간의료보험은 별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납부

Q21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A 산재보험료는 매달 납부해야 하므로, 분할 및 일시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Q22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지서 재발송 요청 또는 가상계좌 발급, 전자고지 신청 등을 하시면 됩니다. 이사 등으로 인해 납부고지서 수령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을 통해 변경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Q23 장기 해외 체류 시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장기간 해외 체류 시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거나 교부받은 고지서로 대리인이 은행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서가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Q24 예술활동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활동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보험효력은 유지됩니다. 또한, 계약서 여부와 관계 없이 보험 유지 중 예술활동과 관련된 재해가 발생하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5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을 할 때만 보험료를 낼 수는 없나요?

A 예술인이 가입하는 중소기업사업주 형태의 산재보험은 가입 시 보장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동안 유지되다가 해지 희망 시 별도로 해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보험 가입 당해 연도에는 해지가 되지 않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6 **보험이 만기되면 기존 납입금이 환급 되나요?**

A 산재보험은 만기의 개념이 없는 사회보험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환급개념이 없는 보장성 보험이므로, 일부 민간 보험에서 지급하는 방식의 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

Q27 **월 납부 보험료를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

A 매년 12월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다음해 산재보험료율과 기준보수액이 고시되며, 가입자는 다음 해 납부할 등급별 보험료를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산재보험 가입자에게 매년 12월에 다음해 보험료를 안내하고, 보험료 변경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기준보수액 변경에 따른 우편물을 발송하여 안내하며, 다음해 1월 말까지 재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미납과 해지

Q28 **미납된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A 2개월 이상 보험료가 미납됐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관리지사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락하셔서 보험 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납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하여 별도의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Q29 **지난 3월 계약 종료 후, 쉬다가 최근 10월 예정된 새로운 공연 계약을 했습니다.**
4월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예술활동 계약 종료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산재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하면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한 이후부터 보험 해지 신청 전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임의가입자가 보험료 체납 등으로 계속하여 보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보험 관계를 직권으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4월분(납부기한 5월 10일) 이후 보험료를 7월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보험 관계가 소멸되었을 수 있으니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확인하셔야합니다. 만약 보험관계가 소멸되었다면 다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Q30 **올해 2월 1일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4월 보험료가 미납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5월 20일에 연극 공연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잔고 부족으로 미납 사실을 모르다가 부상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4월 보험료(납부기한 5월 10일)를 체납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신 경우로, 원칙적으로는 보험급여 지급이 안 됩니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속한 달인 5월의 다음 다음 달인 7월 10일까지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 날 이후 보험급여를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2월 보험료(납부기한 3월 10일)가 체납되었다면, 납부 기한이 속한 달인 3월의 다음 다음 달인 5월 10일이 지난, 5월 20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체납된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더라도 보험급여 지급이 되지 않으니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매월 산재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보험료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Q31 **산재보험 해지 이후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최초 산재보험 가입과 마찬가지로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여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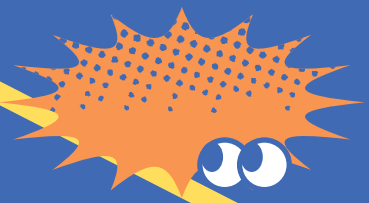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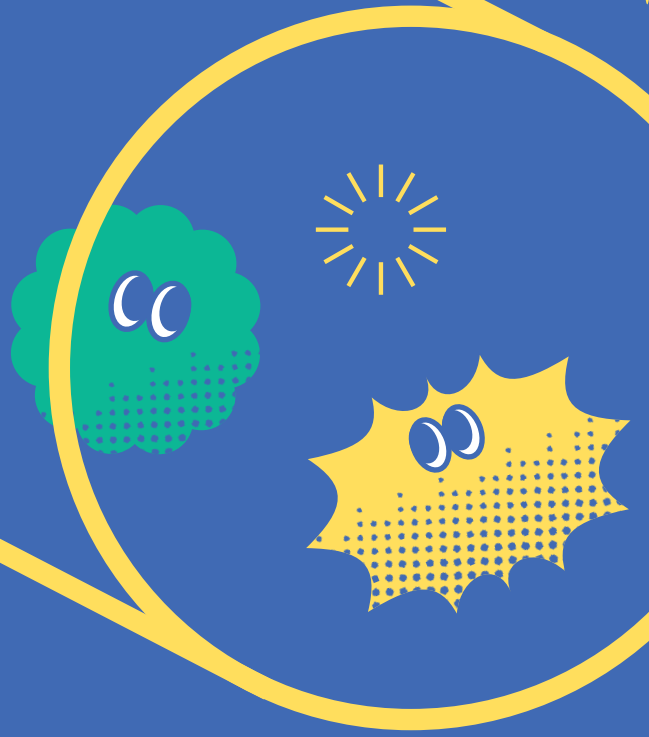

1. 청구 절차와 방법
2. 청구 조건
3. 불승인의 경우
4. 산재지정 의료기관

FAQ 자주 묻는 질문

① 청구 절차와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제출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산재 지정 병원 내 산재 청구 서식이 마련되어 있으며, 병원을 통해 산재 청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재 승인 이후 치료 및 절차 진행이 용이하므로 지정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산재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산재 비지정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 재해자가 직접 산재 청구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산재 승인 이후에는 지정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산재 청구 절차

산재 발생

응급조치 후 병원 이송 또는 진료 (산재지정 의료기관 여부 확인)

STEP 1 산재 청구 서류 준비

요양급여신청서 작성(초진병원의 의사 소견서 요청하여 준비)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경우	산재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경우
병원, 근로복지공단, 재단으로 신청서 작성 문의	공단 또는 재단으로 신청서 작성 문의

STEP 2 산재 청구 서류 제출

근로복지공단 담당지사 재활보상부에 온라인/팩스/우편/방문/의료기관대행 접수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경우	산재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경우
병원에서 서류 제출 대행 가능	직접 온라인/팩스/우편/방문 제출

STEP 3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후 승인 여부 통지

접수 후 7일 이내 승인 여부 통지 (업무상 질병 청구 시 7일 이상 소요)	근로복지공단 → 예술인

STEP 4 산재 승인 시 급여 지급

요양급여(치료비) 지급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근로복지공단 → 예술인

※ 불승인 시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STEP 5 (해당 시) 휴업급여 청구 서류 공단 제출

휴업급여청구서 작성 및 근로복지공단 제출

STEP 6 (해당 시) 승인 시 급여 지급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근로복지공단 → 예술인

* 공단의 산재 승인 여부 검토 기간은 업무 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됨

① 청구 절차와 방법

산재 청구 준비 서류

-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 근로복지공단 서식 사용하되, 의사가 별지 3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상병과 치료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서(소견서)로 산재신청이 가능함
  ※ 기타 공단의 요청 자료(재해 경위서, 진료기록부 등)

청구서 작성시 중요사항

- 재해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원인 및 상황 등 '예술활동 관련 재해경위'를 상세히 기재
- 최초 방문하여 치료 받은 병원에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작성 요청 (병원 담당 의사 작성)
- 진료 기록부,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별도 첨부 필요(산재 승인 시 소급 지원됨)
- 산재 승인자가 기 부담한 요양비를 청구할 경우 '요양비청구서' 작성

휴업급여 청구

-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예술인이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근로복지공단 담당지사에 직접 청구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 가능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신청 이외에도 아래의 경우 해당급여를 꼭 별도로 신청하세요

새로운 상병이 진단될 경우	재발된 경우	직업재활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 신청	재요양 청구	직업재활급여 신청

장해가 남은 경우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사망의 경우
장해급여 신청	간병급여 신청	유족급여·장례비 신청

② 청구 조건

산재보험 가입 기간 중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와 그로 인해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

인정기준 세부내용

승인

- 업무수행 행위 및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의 필요적 부수 행위 중 발생한 사고 (예술활동 및 예술활동 준비, 휴식,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관련 사고
-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천재지변·화재 등 활동장소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직업활동 중 반복적인 신체부담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 과로나 극도의 불안, 긴장으로 인한 뇌출혈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
-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사고

불승인

- 보험 가입 시점 전에 발생한 재해
- 예술활동과 관계 없는 사적 행위

※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36조를 준용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 보험료 체납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보상되지 않음.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
  ※ 보험 청구 시 보험료 미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보험료 완납한 후 서류 접수 가능

③ 불승인의 경우

불승인 결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근로복지공단 담당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본부에 심사 청구

- 청구인 또는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이 원 처분을 내린 각 지역 본부(지사)에 심사 청구서를 제출
- 심사 청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심사 청구서)로 함
  ① 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②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③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④ 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⑤ 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

위 심사 청구에서 불승인 시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제기
- 서울행정법원 또는 지사(지역본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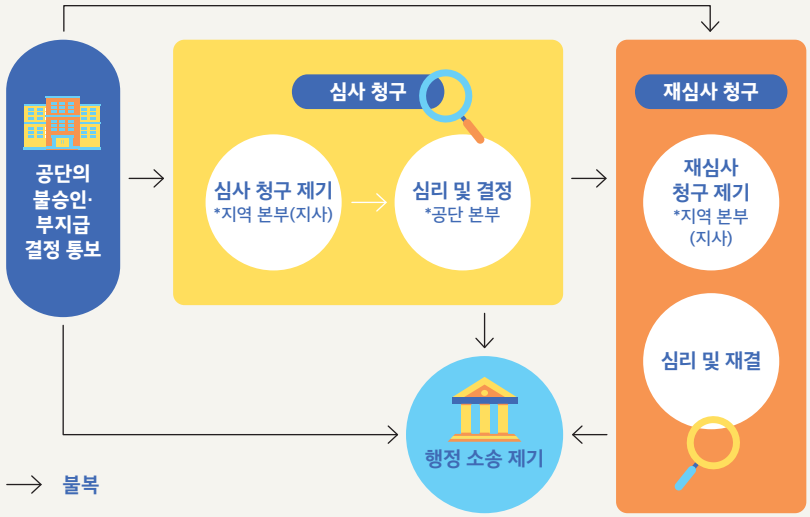

④ 산재지정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병원 및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는 산재지정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병원(공단 직접 운영 의료기관) | 전국 1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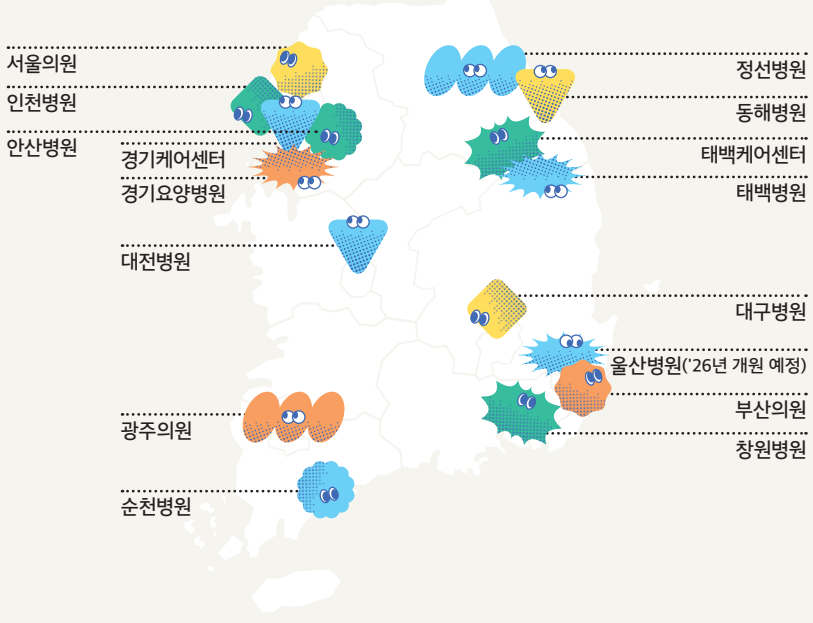

근로복지공단 지정 산재지정 의료기관 | 전국 약 6,200여 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에서 지역별로 검색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58개	315개	967개	468개	2240개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소
441개	1232개	53개	443개	3개

총 6,220개

※ 근로복지공단 지정 산재 의료기관 (2024년 1월 기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8. 12., 2020. 12. 29., 2021.12. 30., 2022. 12 1., 2023. 7. 5.>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요 양 급 여 신 청 서

※ 굵은 선 안은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재해자

성 명(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상 영문명 대문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한 예 복 (본인 이름)	9 8 7 6 5 4 - 1 2 3 4 5 6 7
주 소: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3층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재)	휴대전화: 010-0000-0000 전화번호: 02-0000-0000
재해 발생 일 시: 2024년 00월 00일 00시 00분	채용일자: 년 월 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직 종:

보험가입자(사업주)와의 관계		
	사업주여부	[ ] 해당없음 [V] 실제사업주(동업자포함) [ ] 하수급사업주
	친인척여부	[ ] 해당 없음 [ ] 배우자 [ ] 부모 [ ] 자녀 [ ] 형제자매 [ ] 기타 친인척( )
근로자유형		[ ] 근로자 [ ] 노무제공자 [ ] 중소기업사업주 [ ] 중소기업사업주 가족종사자 [ ] 학생연구자 [ ] 건강손상자녀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23.6.30. 이전 재해) [ ] 현장실습생

신청 구분: [V] 업무상 사고 [ ] 업무상 질병(진폐 · CS2 포함) [ ] 출퇴근 재해

사업장 및 재해 관련 내용

사업장명	한 예 복 (본인 이름)	사업주명	한 예 복 (본인 이름)	연락처(☎)	010-0000-0000

사업장관리번호 (이용개시번호, 플랫폼화물차주관리번호): 9 0 0 - 0 0 - 0 0 0 0 0 - 7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주소: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3층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재)

재해 발생 경위(별지사용 가능)

※ 작성방식: 어디에서(구체적 장소), 무엇을 하기 위해(작업내용, 목적), 무엇을 사용하여(작업도구, 취급물질), 어떻게 하다가(경위, 동작, 움직임),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재해를 당하였는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위 재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음주, 폭행 등의 사유로 경찰서에 신고(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 ] 예	[ ] 아니오
② 위 재해와 관련하여 119 또는 소방서에 구조구급 · 재난 신고(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 ] 예	[ ] 아니오
③ 위 재해와 관련하여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예	[ ] 아니오

목격자가 있는 경우: 성명( ), 연락처( ), 재해자와의 관계( )

재해 발생 후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 전에 진료(치료) 받은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소재지:

의료기관명: 소재지:

< 요양급여신청 의료기관 대행 제출 위임(동의)장 >

본인은 요양급여 신청서를 아래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근로복지공단(고용 · 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포함)에 제출하는 것을 위임·동의합니다.

위임하는 자(신청인)	위임받는 자(의료기관)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별지 제3호 서식)

위와 같이 업무상재해 인정 및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2024 년 0 월 0 일

신청인 한 예 복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1 재해자
- 산재보험 가입자 본인 (재해를 당한 자) 정보 기재
- 보험가입자와의 관계는 '실제 사업주' 체크

2 재해 관련 내용
-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 중 해당란에 체크
- 사업장관리번호 기재
- 재해 발생 경위를 작성방식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증빙자료가 있다면 첨부할 것

3 서명인 란
서명·날인 필수

④ 보험급여 청구

(뒷 면)

다른 보상

①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까?
1. [ ]예 2. [ ]아니오

② 보상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내역(①에서 "예"라고 체크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수령일자	수령금액	지급한 자(기관) 또는 지급처	첨부서류
			①합의서②판결문(또는 결정문)③영수증④기타

안내사항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신청서가 접수되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 의견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② 재해경위 등 주요 사항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③ 사업장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에서 사업장명 등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공단 또는 콜센터(1588-0075)에 문의(전화, 팩스)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요양급여신청서의 진행 상황은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회원가입 또는 휴대폰 인증 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조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험급여 결정에 관한 통지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와 무관하게 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⑥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은 「대리인 선임 신고서」, 가해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귀하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의 **업무상 재해 및 보험급여 지급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귀하의 소중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동의에 거부하더라도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 수집이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필수] 업무상 재해 결정 등을 위한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이용기간
업무상 재해여부 결정 및 보험급여 지급 결정	건강검진기록, 진료내역, 장애인증명서	10년

[필수] 업무상 재해 결정 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이용기간
업무상 재해여부 결정 및 보험급여 지급 결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증명,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10년

☐ **공단의 부가서비스 홍보와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안내 및 조사 목적**으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동의에 거부하더라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및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동의 거부 시 홍보자료 및 홍보물품 수령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이용기간
공단서비스 안내 및 홍보 (문자, 전자우편, 감사편지)	성명, 연락처(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의료기관명	5년

☐ **공단 및 공단과 계약된 수탁기관의 일상복귀지원,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공단 및 공단이 지정한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을 통한 상담, 직업복귀 소견서 제공 등 직장복귀 지원 목적**으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 목적에 해당하는 일상복귀지원 및 직업재활서비스, 직장복귀지원 상담과 직업복귀소견서 제공 등 직장복귀지원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선택]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공받는 기관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이용기간
계약된 수탁기관	– 일상복귀지원(심리상담, 재활스포츠, 멘토링 희망찬기사회적응기족화합프로그램) – 직업재활서비스(원직복귀지원, 직업훈련, 재취업)	성명, 연락처(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의료기관명	3년

[선택] 원직장 복귀를 위한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참여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민감정보·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공받는 기관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이용기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사업주	–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 · 직장복귀 지원 안내·상담 · 직장복귀계획 이행을 위해 사업주에게 산재보험토탈서비스	•성명, 연락처(일반전화, 휴대전화) •산재승인정보(의료기관명, 상병명, 요양기간, 장해등급, 수술여부), 직업복귀소견서	3년

성명 한 예 복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소견서 양식은 의료기관에서 작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8. 12., 2020. 12. 29.>

※ 해당란에 [✔] 하고 기재하십시오. (앞 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① 성명(외국인은 영문명)	②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③ 재해일자
④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년 월 일(:) [ ]본원 [ ]타 의료기관( )	
⑤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년 월 일(:)	
⑥ 내원방법	[ ]도보 [ ]구급차 [ ]구급차의 차량 [ ]기타( )	
⑦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⑧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환자가 진술하는 대로)	년 월 일 (:) 최초 발생	⑨ 재해 당시 의식소실([ ]유 [ ]무)
	증상의 내용	
⑩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환자의 표현대로)		
⑪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주요 이학적·도수 검사 등) ※ 상세 소견은 별지 사용 가능		

⑫ 주요검사

[ ]X-Ray [ ]CT [ ]MRI [ ]MRA [ ]심장혈관조영술 [ ]Bone scan [ ]PET

[ ]초음파 [ ]내시경 [ ]관절경 [ ]근(신경)전도 [ ]폐기능 [ ]조직 [ ]적외선체열

[ ]정신상태 [ ]심리학적 [ ]기타·특이사항( )

※ 주요소견 기재 또는 결과지 첨부

⑬ 기존(기초)질환

고혈압([ ]유[ ]무) 혈압약([ ]미복용[ ]부정기복용[ ]정기복용) 고지혈증([ ]유[ ]무) 상병관련 가족력([ ]유[ ]무)

당뇨([ ]유[ ]무) 당뇨치료([ ]미복용[ ]약물복용 [ ]인슐린) 결핵([ ]유[ ]무) 간염([ ]유[ ]무)

[ ]기타·특이사항( )

재해 전 본원에서 유사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여부 [ ]유 [ ]무

기타·특이사항(일시·시술명·부위·의료기관)

⑭ 상병명과 상병코드

상해코드	주/부/파생	상병코드(KCD기준)	세부상병명(확정진단 병명)

(상해코드) 두부(뇌/두개골/두피), 눈, 귀(내/외부), 안면부, 목, 팔, 손/손가락, 가슴/등, 허리, 엉덩이, 다리, 발/발가락, 복합부위, 순환기관, 호흡기관, 소화기관, 비뇨/생식기관, 신경계통, 복부, 전신, 기타 중에서 상병코드별 하나씩 기재

(주/부/파생) 주상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에 따라 주된 병태에 해당하는 하나의 상병코드에 대해서만 가능

(상병코드) 확진(최종) 진단명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숙하는 최하위 코드로 코딩하여야 하고, 병태의 외인을 설명하는 부연코드(대분류 코드가 V, Y, Z인 것)는 산재보험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상병의 병태에 해당하는 코드로 코딩

(오류예시) 하나의 상병으로 코딩할 수 없는 여러 상병을 하나로 표시하는 것, 질병 또는 손상에 의한 상병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대분류 M코드를 손상으로(또는 S코드를 질병으로) 코딩

(210mm×297mm, 일반용지 60g/㎡)

- 초진병원 또는 진단명 확인 받은 병원에 소견서 작성 요청
- 병원에서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작성 거부 시 치료기간, 방법 등이 명시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로 대체 가능

(뒷 면)

⑮ 입원	예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주)
	사 유	[ ]수술 [ ]의식장애 [ ]외·기기고정 [ ]석고붕대고정 [ ]절대안정 [ ]안정 및 보호 [ ]이동불가 [ ]기타
⑯ 통원	예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주)
	사 유	
	취업치료 여부(근무 병행치료)	※ 취업치료(근무 병행치료)는 치료받으면서 근무가 가능한 상태를 말함(의학적 판단) [ ] 취업치료가능 [ ] 취업치료 불가능 : 향후 ( )개월 후 가능성 재판단
⑰ 수술	수술여부	[ ]없음 [ ]있음 / 수술명
	수술(예정)일	년 월 일 / 수술의료기관 [ ]본원 [ ]타원( )
⑱ 계속 동반 치료가 필요한 기존질환명		
⑲ 집중재활치료의 필요 구분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전문재활치료로서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뇌혈관, ㉯3개월 이내의 척추·견관절·주관절·완관절·수부·고관절·슬관절·족관절·족부질환자, ㉰해당기간 도과했으나 재활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사람에게 제공, 단, 염좌, 타박상 등 경미한 상병은 제외) [ ]일정기간 집중재활치료 곤란 [ ]3개월 이내 치유 또는 13급 이하의 장해 예상 [ ]집중재활치료 필요(또는 예정) [ ]집중재활치료 질환자 아님 [ ]상태 악화 또는 수술 예정 [ ]집중재활치료 불필요( )
협진, 병행진료가 필요한 진료과목		심리상담 필요 (개인별 심리상담 지원) / [ ]필요
의료기관 변경	변경할 의료기관명: 소재지: 의료기관 변경사유: ※의료기관 변경이란 생활근거지 또는 전문적 치료 등을 위해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기관 변경(예정)일자	년 월 일

<첨부서류>

1. 신청 상병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검사자료 및 결과지 각1부.
2. 절단, 화상, 좌열창, 욕창은 환부 칼라사진
3. 정신질환의 경우 진단의 근거를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응급진료 또는 초진기록지 등 의무기록 및 각종 검사 결과지 각1부.(뇌영상 검사, 뇌파 검사, 심전도 검사, 정신상태 검사, 심리학적 검사, 감상선 기능검사 등)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의료기관명: (서명 또는 인)

■ 산재관리의사 여부: [ ]산재관리의사 [ ]해당없음

의사면허번호: 호

전문과목: (전문의: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자문의사 소견

년 월 일 자문의사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 산재 승인자가 기 부담한 요양비를 청구할 때 사용

1. 진료기록부,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함께 제출

2. 산재 승인 이후 제출하는 건으로, 병원을 통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 담당지사로 직접 제출

1 기본 인적사항
재해발생일은
요양급여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2 청구내용
기 부담한
요양비(치료비) 관련
치료기간, 청구액,
수령계좌 및
증빙자료 추가 첨부

3 서명인 란
서명·날인 필수

[별지 제 10호서식] <개정 2018. 7. 17.> <개정 2018. 12. 12.> <개정 2019. 5. 2.> <개정 2021. 12. 28.> <개정 2021.12. 30.> (앞 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 양 비 청 구 서

처리기간 10일

①사업장관리번호	900-00-00000-0						②사업개시번호									
재해자 (청구인)	③성명	한 예 복 (본인이름)	④주민등록번호	9	8	7	6	5	4	1	2	3	4	5	6	7	⑤직종	예술인
	⑥주 소	(12345) ○○ ○○○ ○○○○ 00-00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재) ☎ 010-0000-0000														
	⑦채용연월일	0000 년 0 월 0 일 (보험관계 성립일자)	⑧재해발생일시	0	0	0	0 년	0	0 월	0	0 일	0	0 시			
청구내용	⑨청구구분	[V]요양비 [ ]간병료 [ ]이송비 [ ]보조기 [ ]기타												상병부위 및 상병명	※ 뒷면 소견서 참조	
	⑩기 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일간 [입원 (일), 통원 (일)] ※ 첫 치료일 ~ 청구서 작성일 이전까지의 치료기간														
	⑪산출내역(별지 사용가능)		※ 진료기록부,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첨부													
	⑫청 구 액	0,000,000 원	⑬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은행 0000-00-00000				

※"희망지킴이"는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를 말하며, 기 등록된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계좌 □희망지킴이통장

간병료를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간병서비스 수혜여부 표시 [√] 간병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 ]기타( )

④ 확인사항

① 청구기간 동안 사업주나 제3자로부터 해당 요양비를 지급받았습니까? [ ] 예 [ ] 아니오
② 이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그 외 법령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습니까? [ ] 예 [ ] 아니오
※ 배상 또는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내역을 작성해 주세요

수령일자	수령금액	지급한자	첨부서류
			합의서, 판결문, 영수증, 기타서류 등

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선택사항)

공단의 부가서비스 홍보와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안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이용 내역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이용기간
홍보문자, 전자우편 전송, 감사편지 발송 등	성명, 연락처(일반전화, 휴대전화, 주소)	5년

※ 위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 동의에 거부하더라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및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동의 거부 시 홍보자료 및 홍보물을 수령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험급여 결정에 관한 통지는 등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와는 무관하게 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 년 00 월 00 일

신 청 인 : 한 예 복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02-0000-0000 휴대폰 : 010-0000-0000 E-mail : abcdefg@kawf.kr
대 리 인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위 임 장

위 본인은 요양비청구서를 아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하여 제출할 것을 위임·동의합니다.

위임하는 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요양비 : 영수증, 병원비의 경우 진료비 상세내역서, 약국 약제비의 경우 처방전 등
- 간병료 : 영수증(가족의 경우 제외, 간병인 자격증 및 수료증(전문 간병인에 해당되는 경우), 상병상태 확인 가능한 기록지(진료기록, 간호기록 – 통원 제외) 등
- 이송비 : 영수증(버스, 전철 등 사실상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이송경로내역서, 의료기관의 통원요양 사실 확인서 등
- 보조기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재활보조기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등
※ 필요시 이외의 자료를 담당자가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의(참고)사항(요양비 청구서로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한함)
· 발기를 이용하여 재해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공단은 재해지의 요양급여신청 사실을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통지하고, 10일 이내에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므로 그 확인을 위하여 연락처란기입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한	

- 의료기관에서 작성

(뒷 면)

소 견 서 (의료기관 작성용)

⑲성 명				⑳주민등록번호										㉑재해발생일	년 월 일	
㉒상병명과 상병코드	구분	진단명	상병코드(KCD)	구분	진단명	상병코드(KCD)										
	주상병			부상병												
	부상병			부상병												
	부상병			파생상병												
	부상병			파생상병												
	부상병			파생상병												
㉓기존질병 및 장해상태																
㉔요양기간	입 원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통 원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취업치료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재가요양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㉕간병확인	간병범위	[ ]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 ]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흔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 ] 5. 체표면적(체표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 ]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 ] 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 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 10. 그 밖에 부상·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간병 필요정도 조건	※ 보행, 일상생활 가능 여부 등 간병이 필요한 정도 및 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														
	간병종류	[ ] 1인 간병 [ ] 1인이 2인 이상 간병 (간병인 ( ) 명 대비 환자 ( ) 명)														
	간병기간	. . . ~ . . . (일간) * 단, 회복실, 중환자실 사용기간이나 완화의료(호스피스)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기간은 제외됨 회복실 또는 중환자실 사용 여부 [ ] 무 [ ] 유 (사용기간: ~) 완화의료(호스피스)서비스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여부 [ ] 무 [ ] 유 (이용기간: ~)														
	간병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주소 □□□□□												환자와의관계		
		자격 [ ] 간호사 [ ] 간호조무사 [ ] 요양보호사 [ ] 요양보호사 외 전문교육이수자 [ ] 기타														
		※ 간병 담당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사용 가능														
㉖이송비 (통원확인)	총진료일수	. . . ~ . . . .(일간) 실통원일수														
	신출내역	원 (세부내용은 별지작성가능)														
㉗의지·보조기대	품명(분류번호)		수량		회수		구입가격	원								
	필요소견															
㉘기 타 (특수촬영등)	품 명 (분류코드)		회수		가격	원										
㉙통원기간중 취업가능 여부 및 시기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의료기관명: (서명 또는 인)

■ 산재관리의사 여부: [ ]산재관리의사 [ ]해당없음
의사면허번호: 호
전문과목: (전문의: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자문의 소견

년 월 일 자문의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 80g/㎡)

서식 8 **휴업급여청구서**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8.12.12., 2019. 8. 12., 2020.12.04., 2021.07.02., 2023.07.05.>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휴 업 급 여
[ ] 상병보상연금 **청 구 서**

※ 공통란은 모두 기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산재 근로자	성 명 한 예 복 (본인이름)	생년월일 0 0 0 0년 0 0월 0 0일
	재해발생일 0 0 0 0년 0 0월 0 0일	
수령 계좌	**수령계좌를 변경 하시겠습니까? [ ] 예 [∨] 아니오**	
	은행(증권사)명: △△은행 **(보험료 수령 계좌 작성)**	
	계좌번호: 000-00-00000-00 (예금주 : 한 예 복)	
	[∨] 보통계좌 [ ] 보험급여 전용계좌(희망지킴이-압류금지계좌)	
청구 기간	0000 년 00 월 00 일부터 0000 년 00 월 00 일까지 (00 일간)	
확인 사항	① 청구기간 중 취업(자영업 포함)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취업함 [∨] 취업하지 못함	
	② 청구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까? [ ] 예 [∨] 아니오	
	③ 이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그 외 법령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습니까? [ ] 예 [∨] 아니오	
	※ 배상 또는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내역을 작성해 주세요.	

수령일자	수령금액	지급한 자	첨부서류
			합의서, 판결문, 영수증, 기타서류 등

※ **유의사항:** 위 확인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 지급 신청	2회차 지급분 부터(휴업급여는 입원요양기간에 한함) 자동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지급을 신청하시겠습니까? [∨] 예 [ ] 아니오

위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24 년 0 월 0 일

청 구 인 한 예 복 (서명 또는 인) ☎ 010-0000-0000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청구서 제출 대행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청구서를 아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해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의료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

1 기본 인적사항
재해발생일은 요양급여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2 수령계좌 및 청구기간
급여 수령계좌 작성 및 해당하는 요양기간 작성

3 확인사항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은 취업기간 등에는 지급되지 않음

4 서명인 란
서명·날인 필수

자주 묻는 ? ! 질문 FAQ

Q32 예술활동 중 산재가 발생하면 해당 예술활동 계약 고용주(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A 예술인 산재보험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이 스스로 사업주가 되는 구조이므로, 프리랜서 예술활동 계약을 통한 예술활동 중 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고용주(사업주)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산재 청구 시 고용주(사업주)에게 확인 의무가 없으며, 어디까지나 예술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예술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제도입니다.

4대보험 가입 등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산재 발생 확인 절차 및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이와는 다른 점입니다.

Q33 상황이 위급해서 먼저 자비로 치료를 완료한 경우에도 산재보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산재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병원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 현물 급여(병원에서 받는 치료 그 자체)가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본인이 먼저 부담한 경우에는 산재 승인이 된 후 요양비 청구를 하면 산재 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항목 등의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4 방송 촬영 도중 부상을 입고 바로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치료 받은 경우도 본인이 별도로 산재보험 청구를 해야 하나요?

A 네. 산재보험 청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라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려면 먼저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의 산재청구 담당자에게 절차를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심사하여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 줍니다.

Q35 추가 부상이 발견되면 산재보험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혹은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상병의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6 요양 치료 후 재발하면 산재보험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치료가 종결된 상태에서 질병이 재발되거나 다시 악화되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요양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여 다시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 주소지 관할 지사나 최종 치료를 받았던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관할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요양신청 및 재요양 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위 서류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재요양 사유, 재요양 신청 상병과 최초 승인 상병 및 재해와의 인과관계, 재요양에 의한 치료 효과에 대한 의학적 자문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재요양 승인 이후의 요양과정은 최초 요양과 동일합니다.

Q37 보험료 미납상태에서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보험료를 체납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신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험급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의 납부 기한의 다음 다음 달 납부일까지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그날 이후 보험급여를 일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한 보험료의 납부 기한의 다음 다음 달 납부일 이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체납된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더라도 보험급여 지급이 되지 않으니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Q38 국내 회사와 계약하고 해외 활동 중 재해 발생 시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한국 법인과의 계약이라면 해외 활동 중 재해도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던 중의 사고는 산재 지원이 불가합니다.
반대로, 외국 법인과의 계약의 경우에도 국내 활동 시 재해라면 적용 가능합니다.

Q39 치료 중 병원을 옮기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병원을 옮겨 치료 받고자 하는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요양 신청서'에 현재 치료 받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주치의의 소견을 기재해 해당 병원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접수가 되면 해당 지사에서는 산재 근로자 및 예술인의 생활 근거지나 수술 및 전문적 치료의 필요성 등 의료기관 변경요양을 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지해 줍니다.

Q40 산재보상 청구 과정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산재보상 청구 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은 누구나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에서 산재청구 보상관련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 청구 시 발생하는 궁금증과 어려움에 대해 1:1 게시판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지원합니다.

타 보험과의 관계

Q41 산재보험이 다른 민간 보험보다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A 요양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원하는 휴업급여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민간 보험의 경우 특약 사항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료가 끝난 후에 상병이 재발하는 경우 재요양을 지원하며, 가입 연령 제한이나 치료비 상한 한도가 없다는 점 등입니다.

Q42 민간 상해보험과 중복 지원이 되나요?

A 치료비(요양급여)는 중복 지원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민간 보험에서는 특례조항으로 일부 중복 지원되는 경우도 있으며,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수급 시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민간 보험으로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 보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요양급여)는 민간 보험을 통해 보상받고, 휴업급여 등은 산재보험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Q43 산재보험 가입 시 선택하는 '보수등급'으로 소득 신고가 되는 건가요?
산재보험 기준보수가 건강보험 등 여타 보험의 비용과 요율에 영향을 주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 보수 등급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의 상황을 감안해, 예술인 스스로 부담하게 될 산재보험료 및 지급받을 보험급여액 수준을 직접 선택하도록 구간을 정한 것일 뿐 실제 소득신고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타 보험료 및 세금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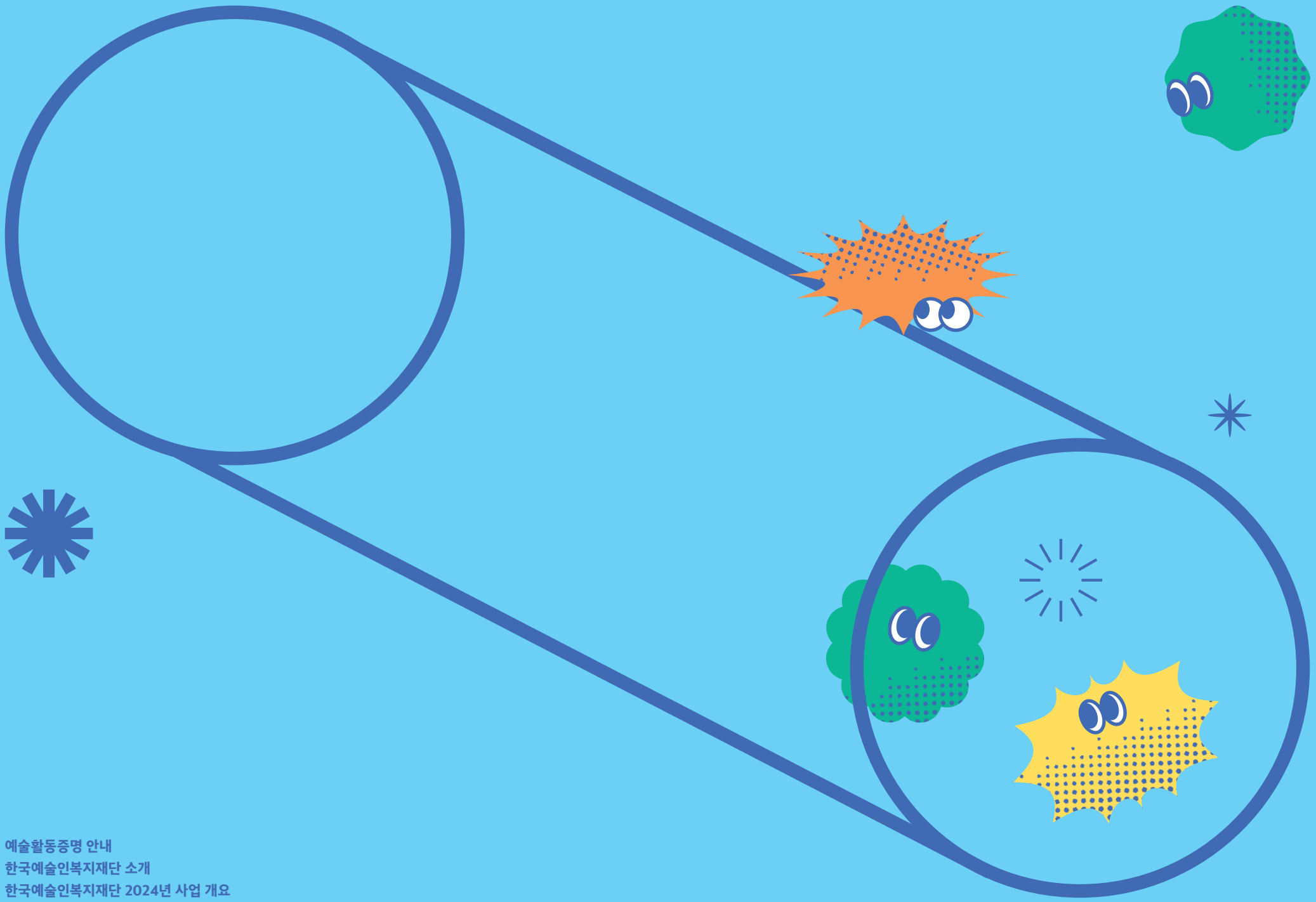

예술활동증명 안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소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4년 사업 개요

예술활동증명 안내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예술인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 11개 예술분야(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방법별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예술활동 자료 제출을 통해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증명 방법 및 제출자료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분야 및 기준별 자료 제출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	• 예술활동 관련 계약서 또는 예술활동 실적자료 ※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신속하게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마칠 수 있으며, 타 복지사업 신청 시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등의 방법으로 재신청해야 함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 출간·공연·전시·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공개 발표된 예술작품에 참여한 실적 또는 저작물의 발행 실적이 있는 예술인 • 공개 발표된 예술작품 또는 저작물의 발표일시·장소, 성격, 주최·주관, 규모, 발표매체, 참여예술인 이름, 역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예술활동 수입	• 예술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예술품 판매대금 등 수입이 있는 예술인 • 해당 수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개 발표된 예술작품 또는 저작물의 발표일시·장소, 성격, 주최·주관, 규모, 발표매체, 참여예술인 이름, 역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계좌정보 (은행명·계좌번호·계좌주명), 입금정보(입금일자·입금액·입금자) 자료 제출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 과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받은 이력이 없는 예술인 • 최근 2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자료 제출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 문화재청 및 (광역)시·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 문화재청 및 (광역)시·도에서 발급한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인정서 제출 • 문화재청 및 (광역)시·도에서 발급한 이수자 이수증, 공개 발표된 예술작품 발표일시·장소, 성격, 주최·주관, 규모, 발표매체, 참여예술인 이름, 역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기준 외 활동	• 원로예술인(만70세 이상): 오랜 기간의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경력단절예술인: 질병, 육아, 출산, 가족 돌봄, 군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증빙 자료 및 경력단절 전·후 활동에 대한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자료 제출 •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 특수한 작업 방식에 대한 증빙자료 및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자료 제출

진행절차

- 예술활동증명 진행 절차

예술활동증명 기준 확인	→	자료 준비	→	신청 (온라인)	→	행정 심의	→	심의위원회 심의	→	결과 공지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심의위원회 운영
  - 문학, 미술(일반미술,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사진, 건축, 무용, 음악(일반음악, 대중음악), 국악, 연극, 영화, 연예(방송, 공연), 만화 총 11개 분야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심의 진행

신청방법 및결과안내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회원가입 필요)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www.kawf.kr) ➔ 예술활동증명 ➔ 신청방법 및 자료 안내
- **결과안내** 문자 및 전자우편 개별 안내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재단소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2012년도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ARTISTS + WELFARE = AW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볼마크는 행복한 예술인의 웃는 표정을 의미합니다.
예술인(Artists)과 복지(Welfare)의 머리글자 AW를 형상화했습니다.

미션·비전

미션
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지원으로
예술 발전에 이바지

비전
따뜻한 복지지원,
든든한 권리보장,
행복한 예술인

슬로건
예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전략목표

4. 신뢰·공감의 선진 경영체계 확립
3. 지속가능한 예술인 성장환경 조성
2. 예술인의 인권 및 사회적 권익 향상
1. 안정·자립의 예술활동 기반 구축

핵심가치

조화·협력
HARMONY

열린사고
OPEN-MIND

H O P E

전문가 지향
PROFESSIONALISM

윤리·공정
ETHICS & FAIRNESS

예술인 신문고

지원내용 • 권리침해행위와 성희롱·성폭력 피해 관련 신고·상담
• 사후관리 및 피해지원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소송지원,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기타 관련기관 연계 등
지원대상 • 예술활동 관련 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예술인, 예술단체, 예술인조합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상담 신청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사건처리 및 관련 서비스 지원 검토
공고일 상시

예술인조합 결성 신고

지원내용 • 예술인조합 결성 지원
지원대상 •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 준비중인 2인 이상의 예술인
공고일 • 상시

서면계약 위반신고

지원내용 • 서면계약 위반 신고, 계약 상담
지원대상 • 서면계약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공고일 • 상시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지원
지원대상 • 전자계약체결서비스를 통하여 서면계약 체결 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문화예술기획업자
공고일 • 2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지원내용 • 계약,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권리보호 교육 지원
단체 찾아가는 교육
개인 온라인 교육
개인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특강
지원대상 • 현업·예비예술인, 예술사업자, 문화예술 유관기관 종사자, 예술교육 기관 종사자 등
• 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 중·고·대학의 관련 부서(취업지원팀, 학생지원센터 등) 및 단과대학, 예술 관련 기관, 협·단체, 사업체 등
공고일 • 3월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지원내용 • 개인 심리상담 심리검사, 1:1 상담 (12회 한도)
•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예술활동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
종전 개인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신청 가능
- 참여제한: 재단 지원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집단 심리상담은 재단과 사전협의를 통해 신청 가능
공고일 • 2월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납부 보험료 30~50% 지원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사업자
공고일 • 2월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지원내용 • 가입 및 보험 사무대행
• 납부 보험료 50~90% 지원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공고일 • 상시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제도 안내 및 상담
지원대상 •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사업장
공고일 • 상시

예술인 주거공간 지원

지원내용 • 예술인 특화형 임대주택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제공
지원대상 •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임대주택 공급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 등
공고일 • 상반기(예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4년 사업 개요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지원내용 • 예술인 자녀 대상 돌봄센터 2개소 운영

지원대상 • 이용: 예술인 자녀(24개월~10세)
• 운영: 화요일~일요일(요일 운영시간 상이, 사전확인 필요)
• 요금: 무료
• 위치: 대학로 소재(반디돌봄센터) | 망원동 소재(예술인자녀돌봄센터)

공고일 • 상시

일반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지원내용 • 1인당 300만 원 지원(격년제)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참여제한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수혜자
- 2023년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수혜자
-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사업 참여 예술인 등

공고일 • 3월 예정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지원내용 • 1인당 200만 원 지원(생애1회)

지원대상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참여제한: 창작준비금 수혜이력이 있는 예술인 등

공고일 • 하반기(예정)

예술인 파견지원-예술로

지원내용
• 리더예술인 - 예술로 협업사업: 총 980만원(7개월)
- 예술로 기획사업(단년형): 총 840만원(6개월)
- 예술로 기획사업(다년형): 총 960만원(6개월)
※ 다년의 경우, 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여부 결정
• 참여예술인 - 예술로 협업/기획(단년)사업: 총 720만원(6개월)
- 예술로 기획(다년)사업: 총 840만원(6개월)
• 지역문화재단 - 운영규모별 예술인 활동비 및 사업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 예술로 협업/기획사업-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신청서 최종제출일 기준 유효자)
※ 참여제한
-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2024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수혜자
• 예술로 협업/기획사업-기업·기관
- 예술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예술을 통해 이슈/고민을 해결하고 적극적 지원 및 협조가 가능한 기업·기관
• 예술로 지역사업
- 시·도의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광역단위 재단법인 문화재단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문화재단 제외

공고일 • 1~2월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

지원내용 • 온라인 강의 제공
• 멘토링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

지원대상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공고일 • 3월(온라인) | 6월(멘토링)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내용 • 생활안정자금대출(최대 700만 원)
• 전세자금대출(최대 1억 원)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신청일 기준 유효자)

공고일 • 생활안정자금대출 정기 | 전세자금대출 상·하반기(2회)

예술인패스

지원내용 •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관람료 할인 및 생활 속 공간 할인 혜택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유효자/만료자 모두)
•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공고일 • 상시

※ 연중 상시 사업의 경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됩니다.
※ 보다 정확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예술인 산재보험 안내책자

발행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행인 박영정

기획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발행일 2024년 3월 29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전화 02-3668-0200
팩스 02-3668-0380
홈페이지 www.kawf.kr | wci.kawf.kr

제작 (주)인디엔피

ISBN 979-11-92242-25-5

예술인 산재보험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
  (산재 가입, 정보변경, 해지 신청)
- 산재 보상관련 상담
- 납부 보험료 환급 지원

02-3668-0200 | insure@kawf.kr | wci.kawf.kr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 제도 운영
- 산재 가입, 정보변경, 해지 승인
- 산재 보상 접수 및 심사
- 보험급여 지급

1588-0075 | total.comwel.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징수(보험료 수납, 체납 관리)
- 고지서 발행, 자동이체
- 전자고지 신청, 가상계좌 발급

1577-1000 | www.nhis.or.kr